

영등포구의회
제199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

2017. 3. 3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專 門 委 員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檢 討 報 告

1. 경 과

의안 제202호로 2017년 2월 22일 권영식의원 외 8명으로부터 제출되어
2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장애인의 이동에 사용하는 휠체어 등 보장구에 대한 안전조치
및 지도감독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장애인이 이동용 보장구를
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 개·제정에 따라 법조항 변경(안 제1조, 안 제4조)
- 나. 허위 등으로 수리비용 청구시 조치방법 신설(안 제7조)
- 다. 보장구의 안전조치 조항 신설(안 제8조)
- 라. 휠체어 등의 수리소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조항 신설(안 제9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근거

- 「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,
제8조(보조기기 교부 등)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.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·제정됨에 따라 근거 법규를 변경하고
휠체어 등 이동성 보장구 수리의 지원에 필요한 조항을
추가하여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.
- 주요 내용을 보면
 - 「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
법률」 제정으로 「장애인복지법」에서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
따라 근거 법조항을 변경함.

- 장애인휠체어 등의 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, 수리업체에게 수리비용 반환 및 협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에게는 수리비용 지원을 일정기간 제한함.
 -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 지원함.
 - 휠체어 등의 수리소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도·점검을 실시함
-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보장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으로써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관 련 법 령

■ 『지방자치법』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07.4.6., 2007.5.17., 2009.12.29., 2011.7.14.>

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

가.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·위치 및 구역의 조정

나. 조례·규칙의 제정·개정·폐지 및 그 운영·관리

다. 산하(傘下) 행정기관의 조직관리

라.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·감독

마. 소속 공무원의 인사·후생복지 및 교육

바.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

사. 예산의 편성·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

아. 행정장비관리,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

자. 공유재산관리(公有財産管理)

차.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

카.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

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
다. 생활이 곤궁(困窮)한 자의 보호 및 지원

라. 노인·아동·심신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마. 보건진료기관의 설치·운영

- 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- 사. 묘지·화장장(火葬場) 및 납골당의 운영·관리
- 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- 자. 청소, 오물의 수거 및 처리
- 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
- 3. 농림·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
 - 가. 소류지(小溜池)·보(洑)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
 - 나. 농산물·임산물·축산물·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
 - 다. 농업자재의 관리
 - 라. 복합영농의 운영·지도
 - 마.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·지도
 - 바. 농가 부업의 장려
 - 사. 공유림 관리
 - 아.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
 - 자. 가축전염병 예방
 - 차. 지역산업의 육성·지원
 - 카.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
 - 타. 중소기업의 육성
 - 파.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·지원
 - 하.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
- 4.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·관리에 관한 사무
 - 가. 지역개발사업
 - 나. 지방 토목·건설사업의 시행
 - 다. 도시계획사업의 시행
 - 라. 지방도(地方道), 시군도의 신설·개수(改修) 및 유지
 - 마.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
 - 바.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
 - 사. 자연보호활동
 - 아.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

- 자. 상수도·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
- 차.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
- 카. 도립공원·군립공원 및 도시공원, 녹지 등 관광·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
- 타.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
- 파. 주차장·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
- 하.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
- 거.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
- 5. 교육·체육·문화·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
 - 가. 유아원·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·운영·지도
 - 나. 도서관·운동장·광장·체육관·박물관·공연장·미술관·음악당 등 공공교육·체육·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
 - 다. 지방문화재의 지정·보존 및 관리
 - 라. 지방문화·예술의 진흥
 - 마. 지방문화·예술단체의 육성
- 6.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
 - 가.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(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)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·감독